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設置條例(案)

議案 番號	58
----------	----

提出年月日：1991. 12. 6

提出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本條例는 大田開發公社의 設立과 運營에 關한 規程을 定함에 있어 公社의 資本金 및 株式, 組織과 業務, 財務會計 等に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음.

2. 主要 骨子 (7章, 本文第41條, 附則第4條로 構成)

가. 第 1 章 總 則

- 公社의 性格은 法人으로 함(案第2條)
- 公社의 資本金은 授權資本金 30億원, 設立資本金은 授權資本金의 $\frac{1}{4}$ 以上으로 함(案第4條)
- 公社의 株式發行은 記名式 普通株로 하고 1株權의 金額은 5,000원으로 하고 總 發行 株式은 60萬株로 함(案第5條)

나. 第 2 章 任員 및 職員

- 社長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大田直轄市長이 任免함 (案第10條 第2項)
- 理事 및 監事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任免함.(案第10條 第3項)
- 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 各 1회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함(案第11條)

- 公社의 重要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두도록 함.(案第17條)

다. 第 3 章 業 務

- 公社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業務를 行할 수 있도록 함.(案第19條)
 - ① 建設資材 生産 및 販賣
 - ② 駐車場 管理 事業
 - ③ 清掃 衛生 事業
 - ④ 都市 및 地域開發 關聯事業
 - ⑤ 河川關聯事業
 - ⑥ 其他 自治團體가 委託하는 事業
- 經營評價는 大田直轄市長이 年1回以上 評價하도록 함.(案第22條)

라. 第 4 章 財 務 會 計

- 公社의 事業年度는 一般會計에 準하도록 함.(案第23條)
- 公社는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年度 開始 1月前에 大田直轄市長에게 提出· 承認을 얻도록 함.(案第24條)
- 公社는 決算結果 利益이 생긴 때에는 다음 順序에 따라 處理하도록 함.(案第27條)
 - ① 移越 缺損金의 補填
 - ② 株主에 대한 利益 配當
 - ③ 事業 準備金의 積立

마. 第 5 章 起 債

- 公社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 私債를 發行하거나 外國 借款을 導入할 수 있도록 함.(案第33條 第1項)
- 私債의 總額은 資本金의 2倍를 超過하지 못하게 함.
(案第33條 第2項)

바. 第 6 章 監 督

- 大田直轄市長은 公社의 業務를 監督하도록 함.
(案第35條第1項)
- 公社는 다음 事項에 對하여는 大田直轄市長의 承認을 얻어야 함
(案第35條 第2項)
 - ① 機構및 定員에 對한 事項
 - ② 任員및 職員의 給與및 退職手當 支給基準에 關한 事項
(이 경우 長官의 事前承認 要)
 - ③ 人事規程, 財産의 管理處분에 關한 規程 等

사. 第 7 章 補 則

- 大田直轄市 以外の 者가 出資한 경우에는 이 條例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商法中 株式會社가 關한 規程을 準用하도록 함.(案第 37條)
- 大田直轄市長은 必要한 경우 公社定員의 1/10 範圍內에서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도록 함.(案第39條)

아. 附 則

- 公社의 最初의 事業年度는 公社 設立日로부터 그 해 12月 31日까지로 함.(附則案第2條)
- 公社 設立時 直轄市의 出資額은 15億7千萬원으로 하고 必要時 增資할 수 있도록 함.(附則案第3條)
-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公社設立에 必要한 經費는 直轄市 一般會計에서 支出하도록 함.(附則案第4條)

3. 參 考 事 項

가. 根 據

- 地方自治法 第138條 및 地方公企業法 第49條
 - 地方自治法 第138條 第2項 : 地方公社의 設立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 地方公企業法 第49條第2項 : 市·道가 公社를 設立하고 자 할 때에는 그 設立, 業務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을 條例로 定하여야 한다.

나. 立法 豫告

- 期 間 : '91. 11. 12 ~ '91. 12. 1
- 立 法 : 市公報 掲載
- 內 容
 - 總 則
 - 任員 및 職員
 - 業 務
 - 財 務 會 計

- ・ 起 債
- ・ 監 督
- ・ 補 則
- ・ 附 則

다. 市政調整委員會 審議 結果

- 會議 開催 : '91. 11. 22 (金)
- 審議 結果 : 原案 可決
(全體委員 16名中 10名 參席, 全員 찬성)

라. 他市道 比較表 : 別添

대전직할시 대전개발공사 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대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건설자재생산 및 주차장관리, 청소위생사업등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할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대전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등) ①직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중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은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직할시장이 행사한다.

제8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서는 다음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 원 및 직 원

제10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4 (第10回 臨時會 - 內務委 第1次 別添)

- ②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장이 임면한다.
- ③ 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임기 및 직무) ①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 한다.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직할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에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사회에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 장 업 무

제19조 (사업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 2. 주차장 관리 사업
- 3. 청소 위생 사업
- 4.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 사업
- 5. 하천 관련 사업
- 6.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20조 (대상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와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직할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시도지사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직할시의 다른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22조 (경영평가)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직할시장이 년1회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재 무 회 계

제23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직할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영 제50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1월전에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할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6조 (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제2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3. 사업준비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때에는 사업준비금에 보전하고 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사업 준비금
2. 차기이월 결손금

제28조 (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한다.

1.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직할시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

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직할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 직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직할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기금 및 보조금등) ① 사장은 이사회회의 결의와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직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 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 (자본운용 상황의 보고) 공사의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 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20일까지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선수금)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 5 장 기 채

제33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할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직할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차입) ①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차입할 수 있다.

② 직할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35조 (감독) ① 장관과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재정,개정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된 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직할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등)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 (상법 및 타 법령의 준용)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영, 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38조 (권한의 위탁)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공무원의 파견) 직할시장은 공사의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 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초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타 시 비 교 표

부 산 직 할 시	대 권 직 할 시 (안)
<p>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1991.1.7 조례제2776호) 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p> <p>제 3 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네무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p> <p>제 4 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실업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부산직할시(이하"직할시"라 한다)가 권역을 현금 또는 현물</p>	<p>대전직할시 여진개발공사 설치조례 (1991... 조례제 호) 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목적) - - - - - - - - - - 대전직할시 - - - - - (- - - -) - - - - - - 건설차적생산 및 주차장관리, 청소와 생사업등 - - - - - - - - - - - - - - - 제 2 조 (법인격) - - - - - 제 3 조 (사무소) ①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제 4 조 (자본금) ① - - - - - 30억으로하고 공사실업자본금은 수권자본 금의 4분의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 - - - - - - - - - 2분의1을 초과</p>

부 산 직 할 시	대 전 직 할 시
<p>출자야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u>49%를 초과하지 아니</u> 하는 범위내에서 직할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p>	<p>자위 아니 - <u>증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u></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가 출자 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③ - - - - -외하여대전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 - - - - - 대전직할시장(- - - - -) - - - - -</p>
<p>제5조(주식의 발행등) ① 직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 한다.</p>	<p>제5조(주식의 발행등) ① - - - - - - - - - -</p>
<p>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 한다.</p>	<p>② - - - - - - - - - -</p>
<p>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 한다.</p>	<p>③ - - - - - - - - - -</p>
<p>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p>	<p>④ - - - - - - - - - -</p>
<p>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만주로 한다.</p>	<p>⑤ - - - - -60 - - - - -</p>
<p>⑥ 주식 발행권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 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외 결의를 거쳐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⑥ - - - - - - - - - - - - - - -</p>
<p>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중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은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p>	<p>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 - - - - - - - - - - - - - -</p>

부 산 직 할 시	대 권 직 할 시 (안)
<p>할 수 있다.</p> <p>제 7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서는 다음 항목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제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예산에 관한 사항 <p>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p> <p>제 8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p>	<p>제 7조 (설립단체의주주권행사)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직할시장이 행사한다.</p> <p>제 8조 (정관)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p>② - - - - -</p> <p>제 9조 (등기) - - - - -</p>

부 산 직 할 시	대 천 직 할 시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임원 및 직원</p> <p>제 9조 (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관인과 감사로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②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장에 임명 한다.</p> <p>③ 상임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 한다.</p> <p>제10조 (임기 및 직무) ①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제임 기관으로 한다.</p> <p>② 보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 기관으로 한다.</p> <p>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1조 (임원의 자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p> <p>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p> <p>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보권되지 아니한자</p> <p>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임원 및 직원</p> <p>제10조 (임원) ① - - - - -</p> <p>- - - - -</p> <p>- - - - -</p> <p>② - - - - -</p> <p>- - - - -</p> <p>③ - - - - -</p> <p>- - - - -</p> <p>제11조 (임기 및 직무) ① - - - - -</p> <p>- - - - -</p> <p>② - - - - -</p> <p>- - - - -</p> <p>③ - - - - -</p> <p>- - - - -</p> <p>제12조 (임원의 자격사유) - - - - -</p> <p>- - - - -</p> <p>1. - - - - -</p> <p>2. - - - - -</p> <p>3. - - - - -</p>

부 산 직 합 시	대 전 직 합 시 (안)
<p>확정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p> <p>4. 병률 또는 병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p> <p>5. 병에 의하여 퇴직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12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권이 정지 는 <u>병에</u> 따라 사장이 임면 한다.</p> <p>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직할사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14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5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사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 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겸사령 공사를 대표 한다.</p>	<p>-----</p> <p>4. -----</p> <p>5. -----</p> <p>제13조 (직원의 임면) ----- ----- <u>병에</u> 의하여 사장이 -----</p> <p>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p> <p>-----</p> <p>-----</p> <p>제15조 (비밀누설금지등) -----</p> <p>-----</p> <p>-----</p> <p>제16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 ----- ----- ----- ② ----- ----- -----</p>

부 산 직 할 시	대 전 직 할 시 (안)
<p>제16조 (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 이사와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17조 (이사와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 할 수 없다.</p>	<p>제17조 (이사회) ① - - - - -</p> <p>- - - - -</p> <p>- - - - -</p> <p>② - - - - -</p> <p>③ - - - - -</p> <p>- - - - -</p> <p>- - - - -</p> <p>④ - - - - -</p> <p>- - - - -</p> <p>⑤ - - - - -</p> <p>- - - - -</p> <p>제18조 (이사와의 참여 제한) - - - - -</p> <p>- - - - -</p> <p>- - - - -</p> <p>- - - - -</p>
<p>제 3 장 임 무</p>	<p>제 3 장 임 무</p>
<p>제18조 (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3. 인공섬건설등 공유수면 매립 사업 4. 재개발 사업 	<p>제19조 (사업업무) - - - - -</p> <p>-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2. 주차장 관리 사업 3. 청소 위생 사업 4. 도시개발 관련 사업

부 산 직 할 시	대 권 지
<p>5. <u>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u></p> <p>6. <u>건설주제 생산</u></p> <p>7. <u>도시개발관련 사업</u></p> <p>8. <u>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u></p> <p>제19조 (대상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p> <p>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업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 (사업구역) 1 공사의 사업구역은 직할시 일원으로한다. 다만,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직할시의 다른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p>	<p>5. <u>아전 관련 사업</u></p> <p>6. <u>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u></p> <p>제20조 (대상사업의 비용부담) ① - - -</p> <p>- - -</p> <p>- - -</p> <p>- - -</p> <p>- - -</p> <p>② - - -</p> <p>- - -</p> <p>- - -</p> <p>- - -</p> <p>③ - - -</p> <p>(- - -)</p> <p>- - -</p> <p>- - -</p> <p>- - -</p> <p>제21조 (사업구역) ① - - -</p> <p>- - -</p> <p>- - -</p> <p>- - -</p> <p>- - -</p>

부 산 칩 할 시	대 전 칩 할 시 (안)
<p>제21조 (경영평가) ① 공사의 경영평가는 직할시장에 년1회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22조 (경영평가) ① - ② - - - - - - - - - -</p>
<p>제 4 장 제74조</p>	<p>제 4 장 제74조</p>
<p>제22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직할 시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p>	<p>제23조 (사업년도) - - - - - - - - - -</p>
<p>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영 제50조 의거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 서를 변경하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p>	<p>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 - - - - - - - - - 제50조 규정에 의거 - - - - - - - - - - - - - - -</p>
<p>제24조 (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 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 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직할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명</p>	<p>제25조 (결산) ① - - - - - - - - - - ② - - - - - - - - - -</p>

부 산 직 할 시	대 전 직 할 시 (안)
<p>하여야 한다.</p> <p>제25조 (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영변하기 위하여 할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 한다.</p> <p>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 할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p> <p>제26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3. 사업준비금의 적립 <p>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준비금 2. 차기이월 결손금 <p>제27조 (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p>제26조 (계리의 원칙) ①</p> <p>②</p> <p>제27조 (손익금의 처리)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p>②</p> <p>제28조 (지방비의 부담)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 산 직 할 시	대 전 직 할 시(안)
<p>2. 직할시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차액</p> <p>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경비</p> <p>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내용 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8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 직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② 직할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9조 (기금 및 보조금등) ① 시장은 여사의회의 결의와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p> <p>② 직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 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p>	<p>2. - - - - -</p> <p>- - - - -</p> <p>- - - - -</p> <p>- - - - -</p> <p>3. - - - - -</p> <p>- - - - -</p> <p>② - - - 제2호 및 제3호 - - - - -</p> <p>- - - <u>공사의 직할시의 협의</u> - - - - -</p> <p>- - - - -</p> <p>제29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 ① - - - - -</p> <p>- - - - -</p> <p>- - - - -</p> <p>② - - - - -</p> <p>- - - - -</p> <p>제29조 (기금 및 보조금등) ① -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 - - - - -</p> <p>- - - - -</p> <p>- - - - -</p>

부 산 직 할 시	대 전 직 할 시 (안)
<p>정관으로 정한다.</p> <p>제33조 (직업) ①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 할수 있다.</p> <p>② 직할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수 있다.</p>	<p>-----</p> <p>제34조 (직업) ① -----</p> <p>-----</p> <p>② -----</p> <p>-----</p>
<p>제 6 장 규 칙</p>	<p>제 6 장 규 칙</p>
<p>제34조 (감독) ① 장관과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 한다.</p> <p>②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2항 제2호의 규정된 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직할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35조 (감독) ① -----</p> <p>-----</p> <p>②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4. ----- <p>③ -----</p> <p>-----</p> <p>-----</p>

부 산 직 할 시	대 진 직 할 시 (안)
<p>제35조 (보고 및 감사등)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p>	<p>제36조 (보고 및 감사등) - - - - - - - - - - - - - - -</p>
<p>제 7 장 보 칙</p>	<p>제 7 장 보 칙</p>
<p>제36조 (상법 및 타 법령의 준용)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법.영.법시행 규칙</u>을 적용 한다.</p>	<p>제37조 (상법 및 타 법령의 준용) ① - - - - - - - - - - ② - - - - - - - - 제외하고는 <u>지방공기업 법.영.</u> - - - - - - - - - -</p>
<p>제37조 (권한의 위탁)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의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38조 (권한의 위탁) -</p>
<p>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9조 (공무원의 파견) 직할시장은 공사의 사장의 요청에 의하여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확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4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 평가.관리) 파견</p>

부 산 직 할 시	대 권 직 할 시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직</p> <p>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 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1월25일 현재로 폐지 한다.</p> <p>제 2조 (관리사무의 승계) 공사는 실령일로 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관리사무를 포괄 승계한다.</p> <p>제 3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실령일로 부터 그 해12월31일까지도 한다.</p> <p>제 4조 (실령시의 시출자액) 공사실령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u>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u></p>	<p>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본에 의하여 실과소의 동일하게 평정관리 한다.</p> <p>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직</p> <p>제 1조 (시행일) -----</p> <p>-----</p> <p>제 2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 제23조의 -----</p> <p>-----</p> <p>제 3조 (실령시의 시출자액) -----</p> <p>-----액은 22억원으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증자할수 있다.</p>

부 산 직 할 시	대 전 직 할 자 (안)
<p>한다.</p> <p>제 5조 (공사실립경비) 이 조력에 의하여 공사가 실립될때까지 공사실립에 필요한 최초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p> <p>제 6조 (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경원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수 있다.</p> <p>제 7조 (직할시장의 공연허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용자금에 대한 근적당권 알소동거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때까지 부산직할시 공연조력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연을 허치 사용할수 있다.</p>	<p>제 4조 (공사실립경비) - - - - -</p> <p>- - - - -</p> <p>- - - - -</p> <p>- - - - -</p>